인구정책TF「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」중 '고령친화적 금융환경 구축' 세부 설명자료

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

2020. 8.

금 융 위 원 회

||| 목 차 |||

Ι.	추진배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п.	고령층 금융이용 실태 및 정책 대응방향 2
ш.	세부 추진과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$\mathbf{IV}.$	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
Ⅰ. 추진배경

- □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*로 진행되는 가운데,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
 - * 65세 이상 인구 비중 : ('00년) 7.2% → ('18년) 14.3% → ('26년°) 21.1%
- □ 금융부문에서도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지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
 - 금융이용과정에서 고령층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**강화된 권유** 절차를 마련하는 등 거래단계별 보호 방안 마련('17.1월~)
 - * 협회별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
 - 고령층 전용창구 설치·운영('10년), 느린말 ARS 도입('15년) 등 **일선 현장의 고령 고객 보호**를 위한 노력도 병행
 - 국민들의 **노후대비 자산형성을 지원**하기 위한 **사적연금 활성화 방안***을 발표, 후속조치 이행중('19.11월, 1기「인구정책 TF」)
 - * 주택연금 활성화, 개인·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방안 등
- □ 그러나, 고령층의 **금융분야 피해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**('17년 5,999건 → '19년 21,201건)하는 등 **고령층 금융애로는 여전**한 상황
 -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고령층 금융소외가 심화되고 고령층 대상 신종 금융사기,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등 금융피해도 점증
 - 금융시장이 자산관리, 건강·질병 위험보장 등 고령층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
- →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,보다 근본적·종합적인 고령층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방안 마련
 - ※ 범부처「인구정책 TF(2기)」의 금융대응반 논의를 위해 금융위 주관 민관합동「고령친화 금융지원 TF(사무처장 주재)」구성·운영('20.2월~)

Ⅱ. 고령층 금융이용 실태 및 정책 대응방향

1 금융이용 실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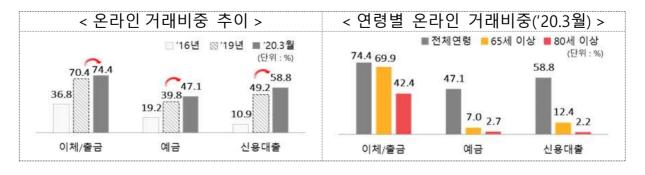
1. 오프라인 지점축소, 온라인화 등으로 고령층 금융접근성 저하

- □ 오프라인 영업망이 축소되고, 인터넷·모바일 거래 등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
 - 고령층 이용비중이 높은 은행지점 등 오프라인 영업망이 축소
 - * 국내은행 지점수 : '13.6말 7,689개 → '19년말 6,711개(△12.7%)
 - 이체/출금 등의 단순한 거래에서부터 예금, 신용대출 등까지 온라인화가 빠르게 진행중

< 온라인 거래비중(시중5개은행 기준) >

	이체/출금	예금	신용대출
′16년중	36.8%	19.2%	10.9%
'20.3월	74.4%	47.1%	58.8%

- □ 이에 따라 디지털 접근·활용도가 낮은 **고령층의 금융애로** 심화
 - 고령층의 경우에도 모바일 이체·출금 중심으로 온라인 거래 비중이 증가*하고 있으나. 타 연령층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수준
 - * 65세이상 온라인 거래비중(이체/출금): ('16년중) 28.9% → ('20.3월) 69.9%
 - 특히, 예금/대출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한 거래의 경우 여전히 온라인 비중이 매우 낮음
 - * 65세이상 온라인 거래비중('20.3월) : (이체/출금) 69.9%, (예금) 7.0%, (신용대출) 12.4%



2. 고령층에 불리한 금융거래 환경

□ 온라인 위주 가격혜택^①, 신용평가상 불이익^②, 고령층의 정보력· 협상력 부족^③ 등으로 거래조건이 고령층에 불리

※ (신용대출사려	∥) 고령층은 연체	세율이 낮음에	도 불구, 평균	· 금리는 높음	k('19년, 전업권)
	30대	40대	50대	<u>60대</u>	<u>70세이상</u>
* 평균 연체	율 2.4%	2.7%	2.7%	2.7%	2.3%
* 평균 금리	11.2%	12.1%	12.0%	12.9%	13.0%

- ① 온라인 시장 선점을 위한 금융회사간 경쟁이 강화되며 수수료· 이자 절감 등 가격적인 혜택이 온라인 상품에 집중*
 - * 건당 이체수수료: (오프라인) 1,031원, (ATM) 194원, (인터넷·모바일) 23원
 - * 상위 10개 펀드 평균 수수료율('20.3월):(온라인) 0.39%, (오프라인) 0.58%
- ② 고령층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*가 많고, 특히 은행권은 고령층 대출 기피 현상**
 - * 고정소득·직업이 없는 반면, 보유 실물자산은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측면
 - ** 연령별 은행권 이용 비중 (%, 1~3등급, 신용대출, '19말) : (20대) 76.0, (30대) 81.6, (40대) 77.0, (50대) 69.5, (60대) 49.8, (70대이상) 46.0
- ③ 고령층은 금융이해도* 및 (가격)정보탐색능력이 낮아 타 연령대 대비 가격 협상력이 부족**
 - * 금융이해도('18년): (전체 연령) 62.2, (60대) 59.6, (70대) 54.2
 - ** 대출만기시 타은행으로 전환하는 비율 : (30대) 20%, (40대) 17%, **(60대) 5%**
 - ※ 英 FCA는 적극적인 가격비교·탐색을 통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는(price walking) 신규고객에게 유리한 가격을 부과하는 금융기관의 가격차별 행태 지적('18.7.)
- □ 저금리 장기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층의 고수익 상품*에 대한 관심이 늘어 나고 있는 만큼. 불완전판매 위험**도 함께 증대
 - * 파생결합증권 전체발행액 중 41.7%를 60대 이상 고객에게 판매 ('18.6말)
 - ** 최근 금리연계 DLF 사태 피해자 중 60대 이상은 48.4%, 70대 이상은 21.3%

3. 고령층 니즈에 맞는 금융상품이 개발·제공되지 못하는 실정

□ 고령층 금융니즈는 단순한 자금증개(대출 등)를 넘어 **자산관리**, 건강·질병위험 보장, 부동산 유동화 등으로 다양화

< 생애주기 단계별 금융니즈의 변화 >

	상속·증여, 자산관리 신탁, 보유 부동산 유동화, 건강관리 등
	자녀교육·결혼자금 마련, 이주비용, 노후대비 본격화
가족형성기 (3~40대)	재무설계, 자녀교육자금 마련, 주택구입, 재테크
사회초년기 (20대)	학자금·결혼자금·전세자금 마련, 자동차 구입, 재테크 등

- □ 반면, 우리 가계금융은 대출 위주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층 수요 흡수에 한계
 - 우리나라 가계금융은 **주택담보대출**, **직장인 신용대출 등** 30~40대 자금수요에 부응하는 대출중개기능 위주로 운용
 - * '19년중 국내은행의 이자 이익 의존도: 86.0%
 - 고령층 특화 상품·서비스 개발이 미흡하고, 건강·질병 위험을 관리·보장하는 금융상품 공급도 부진
 - * 일부 보험회사에서 치매관련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등 고령특화 금융상품이 등장하였으나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황
 - 재산보호·관리·이전(상속/증여) 등 일대일 자산관리에 특화된 치매신탁 등 고령층 맞춤형 신탁업 미발달
 - * 일부은행에서 치매신탁을 취급하고 있으나 계약건수는 100건 이하에 불과

※ 선진국 금융시장의 고령화 대응 현황

- **치매·간병비 보장보험, 고령자 운전보험** 등 다양한 특화 상품 공급 (日, '고령자 운전보험': 실시간 주행상황 체크→잦은 급가속, 지정구역 이탈시 가족 통보)
- 건강저축계좌 세제혜택 등 의료비 목적의 자산형성 지원 (美 HSA(Health Savings Account): 의료비 목적 저축계좌로 소득공제·비과세 적용)
- 신탁업이 성장하고, **치매신탁** 등 고령자 맞춤형 신탁상품 활성화 (日, 신탁재산 총액: '13.9월 820조엔 → '18.9월 1150조엔 (GDP대비 199%))

4.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, 각종 금융사기 등 금융피해 점증

□ 지인(가족·친인척·간병인 등)에 의한 재산편취 등 고령층 대상 '금융착취' 피해가 지속 발생

※ 금융착취 사례

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여성 A씨는 간병인에게 "장 볼 때 쓰라"며 전 재산 5,0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인감을 내어줌. 간병인은 A씨의 인지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3년 전부터 매달 50만~100만원씩의 돈을 인출했고, 뒤늦게 이를 알게된 딸이 항의했지만 간병인은 "어머니 허락을 받고 정당하게 쓴 돈"이라며 반박

- □ 불법사금융*·보이스피싱** 등 '금융사기'가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으로 취약하기 쉬운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산
 - * 불법사금융 피해자중 60대이상 고령층 비중 : '17년 26.8% → '18년 41.1%
 - **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중 60대이상 고령층 피해 비중 : '16년 13.3% → '18년 22.2%
- □ 고령층 금융사기·착취는 **피해인식 및 신고율이 낮아**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**규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**

※ WHO, factsheet on elder abuse('18년, 27개국 조사)

- 노인학대 (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·성적 학대 등)의 경우 신고율이 4%에 불과
- 60세 이상 인구 **약 16%가 노인학대**를 받고 있으며, **약 6.8%**가 **'금융학대'**를 받는 것으로 추산

5. 고령층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금융역량이 미흡

- □ 금융유관기관, 민간 교육단체* 등을 통해 디지털금융 교육, 금융 사기 방지, 은퇴후 자산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 중이나,
 - *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, 투자자교육협의회, 한국투자자보호재단 등
 - 교육 콘텐츠 및 시설·강사진 부족,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의 한계 등으로 충분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*
 - * 대체로 텍스트 위주의 강의식으로 연간 총 5.7만명에 대해 교육 실시 중

2 정책 대응방향

- ◇ 고령층의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고, 고령사회로의안정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고령친화적 금융환경을 조성
- ① [금융접근성 제고] 오프라인 영업망 축소 등으로 고령층의 금융 이용 불편이 심화되지 않도록 고령층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필요
 - □ 오프라인 영업 축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, 고령층도 쉽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
- ② [공정거래환경] 정보·협상력이 부족한 고령층도 공정한 여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환경 개선 필요
 - ⇒ 온라인 전용 금융상품에 대한 고령층의 오프라인 접근성을 보완 하고. 금융기관의 고령층 차별적 관행에 대한 규제·감독 강화
- ③ [금융상품] 금융시장이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금융니즈 다양화에 민첩하게 반응해 나갈 필요
 - □ 고령자의 안정적인 은퇴후 생활을 지원하는 고령층 적합형 금융상품·서비스의 개발·공급 활성화
- ④ [금융피해대응] 각종 금융범죄에 가장 취약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고령층에 대한 보다 강화된 보호기제 마련 필요
 - □ 범부처적 금융사기 방지노력을 강화하고, 거래 최접점에서 피해 사실 조기 감지가 가능한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구
- [금융역량] 고령층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금융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
 - □ 효율적, 체계적인 고령층 금융교육을 위한 범금융권 노력 강화

Ⅲ. 세부 추진과제

비전

어르신들도 손쉽게, 믿고 쓰는 금융

추진목표

주 요

추진과제

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

Ⅱ 오프라인 점포 폐쇄시 관련 사전절차 강화 접근성 제고 전 축소에 대응한 대체창구 마련·제공 3 고령층 친화적 디지털 금융 이용화경 조성 1 온라인 채널에 대한 오프라인 접근성 보완 제2부문: 2 합리적 사유없는 고령충 차별 규제 강화 공정한 거래 집 고령층에 대한 금융상품 정보제공 확대 환경 조성 <u>|</u>|4| 고령층 대상 **불완전판매 방지** 노력 강화 **안정된 노후 2** 노후 위험보장을 위한 **주택연금-치매보험 연계** 생활 지원 📗 금융회사의 맞춤형 상품 개발 적극 유도 제4부문 : 금융회사의 고령충 착취 감사·적발 노력 강화 금융사기· 2 고령층 대상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방지 노력 착취 방지 1 고령층 니즈를 고려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제5부문: 2 효과적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전달체계 활용 금융역량 ③ 높은 전달력을 갖춘 역량있는 강사진 육성 강화 <u>|</u>4 '금교협' 중심의 **효율적 교육 거버넌스** 구축

추진기반

- ◇ '노인금융피해방지법' 제정 등을 통한 법·제도적 근거 마련
- ◇ '**고령친화 금융지원** T/F' 지속 운영을 통한 **집행 기반** 구축

제1과제 기고령층의 금융접근성 제고

◇ 오프라인 점포폐쇄에 따른 고령층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한편. 고령 친화적 디지털 금융이용 환경 조성

1. 오프라인 점포 폐쇄시 사전절차 강화

- □ 금융회사의 점포 폐쇄시 소비자들이 보다 일찍 인지·대비할 수 있도록 폐쇄 前 사전절차를 보완・강화
 - **외부 전문가**를 평가 절차에 참여·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「지점폐쇄 영향평가*」 의 독립성, 객관성을 강화
 - * 은행권 자율규제인 「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('19.4월)」로 도입, 폐쇄 예정 지점의 고객 수·연령대 분포,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 중심으로 평가
 - ㅇ 점포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점포 고객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쇄 3개월전(現 1개월전) 통지

2. 점포 축소에 대응한 대체창구 제공

- □ 폐쇄 점포 인근에 다른 지점이 없거나. 초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등 중심으로 이동·무인점포·창구제휴 등 대체창구 공급 활성화
 - ① 이동버스 등을 활용한 이동적포 활성화를 유도
 - < 이동점포 활성화 방안(예시) : (가칭) "금융5일장" >
 - · 점포 폐쇄지역, 고령층 거주비증 및 근접지역 점포 분포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개설지역 선정
 - 5일장 형식을 차용하여, 방문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**매주 특정요일, 특정시간대**를 정하여 방문



② 화상·유선 등으로 고객 응대가 가능한 무인점포 대체 운영

- < 무인점포 (예시) : STM (Smart Teller Machine) >
- 영상통화, 신분증 스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, 예금·대출·펀드 등 **창구업무를 고객이 직접 처리**할 수 있는 무인 채널
- 초기에는 대기·상담인력(1~2인)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고령고객이 무인점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



- ③ 지점수가 많은 우체국* 등과의 창구업무 제휴 강화
 - * 전국 **우체국 지점**은 **2,655개**로 시중은행 전체 점포수 6,711개 대비 **40% 수준**이며 수도권에 집중된 은행점포(서울·경기비중 50%)와 달리 **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**
 - ※ '20.6월말 현재, 4개은행(기은, 산은, 씨티, 전북)이 우체국과 창구제휴 중
- □ 특히,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 폐쇄시에는 대체창구 마련

※ 해외사례: 영국

- 금융당국인 FCA는 은행 지점 폐쇄 결정시, 고령층 및 취약계층 고객에 대한 영향분석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, 대체접근수단 제공을 의무화
- 대체접근수단으로는 영상 텔레뱅킹, 은행간 점포제휴, 이동점포 등을 인정
- RBS는 스코트랜드, 웨일즈 지역 중심으로 22개의 지역별 모바일 지점 운영중('16)

3.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이용환경 개선

- □ 고령자들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앱과 구분된, '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' 마련·출시
 - 큰 글씨, 쉬운 인터페이스,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
 위주 구성, 음성인식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
 - *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('20.7월~)
 - o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**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**하여 고령 고객 대상으로 **홍보·제공**토록하고, **실적은 주기적으로 점검**
 - * 지점폐쇄 영향분석 등에 반영하여 금융기관의 참여 유도

제2과제 기공정한 거래환경 조성

◇ 온라인 거래에 대한 고령층의 오프라인 접근성을 보완하고, 금융 회사의 고령층 차별·배제에 대한 규제·감독 및 맞춤형 정보제공

1. 온라인 거래에 대한 오프라인 접근성 보완

- □ 고령층 이용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, 오프라인 서비스를 개선
 - o 온라인 특판상품 제공시, 그와 **동일·유사한 혜택**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함께 출시하는 방안 추진
 - o 금융기관이 **자율적으로 추진**하되. 해당 실적을 **소비자보호실태** 평가에 가적으로 반영하여 이행 독려

2. 금융기관의 고령층 차별에 대한 규제 강화

- □ 합리적 사유 없는 **연령차별을 금지**하고, 연령별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 취급거절·가격차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토록 규제
 - *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개정 또는 동법 하위규정 제정 시 반영 추진

< 합리적/비합리적 차별 사례(예시)>

1) 연령 차별 사례

- 판매가능한 연령상한 설정, 고령층 판매시에만 별도의 개별심사 절차 부과 등
- 2) 불가피한 차등으로 인정할수 있는 사유
 - 연령이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리스크 산정 및 가격결정 과정의 핵심요소로서 상품 취급대상 차별화가 불가피한 경우
 - 전체 금융 이용자의 편익증대 및 금융비용 감소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
- ※ 英 FCA: 가격차별 규제시 ①가격차별이 전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었는지 ②경쟁 왜곡 여부, ③사회전반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('18.7)

□ 신규상품 개발시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령별 영향 분석을 실시
* 신상품 출시 前 수행하는 소비자영향분석 시 연령별 영향을 포함하도록 지도
□ 금융기관의 연령별 상품취급 실적은 매년 점검 하여 '소비자실타 평가*'에 반영하고 점검결과를 대외 공개하여 시장규율 도모
* 매년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소비자보호 실태를 점검하여 대외공표
3. 고령층 정보제공 강화
□ 업권별 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내에 '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' 별도 구축
□ 고령고객에 대해 거래거절시 적절한 자사 및 타사의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'대체상품안내제도(Sign posting제도*)' 도입 검토
* 고령층 전용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및 사용방법도 함께 안내토록 의무화
※ 英「Sign posting to travel insurance」제도 - 기존 병력으로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대체보험회사 안내 의무화
4.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방지노력 강화
□ 핵심내용을 간소화시각화 한 고령충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고 가입시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설명의무를 내실화*
* 보험권의 경우 인포그래픽, 동영상 등을 활용한 '쉬운 약관' 마련 노력 중 ('19.10월 '보험약관 개선 추진방안') → 전 업권에 확산
□ 다수의 고령층 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 에 대해서는 <mark>무관용</mark> 원칙을 적용, 제재 가중 및 감면 제한* 검토
* (예)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시행세칙상,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

설명의무를 불이행한 경우,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재 가중 가능

제3과제

안정적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금융상품 개발 공급

- ◇ 노후대비, 자산관리 등 고령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·공급 활성화 노력
 - ※ 주택·퇴직·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은 '1기 인구정책 TF'에서 기논의 ('19.11월 발표)

1. 후견지원신탁("치매신탁") 활성화

- □ **치매환자** 등 **적극적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**를 위해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**후견지원신탁* 활성화**
 - *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,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·간병비·생활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신탁

※ 해외사례: 영국

- 정신능력법(Mental Health Act)의 영속적 대리제도(LPA, Lasting Power of Attorney)에 따라, 재산관리 LPA는 피후견자의 은행 계좌 개설·폐쇄, 주택 등 매매·유지관리, 연금 청구, 세금 문제, 투자, 의료비 지불 등 재산·금융 관련 의사결정 수행
- 고령자를 위한 **보다 효과적인 자산관리**가 가능하도록 수탁재산 범위를 **소극재산**(채무) 및 **담보권** 등으로 확대
- **인가단위 신설** 등 진입규제 정비를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**치매신탁 전문 특화신탁사 진입 여건** 마련

< 후견지원신탁(치매신탁) 구조 > ……… 정기금 교부 피후견인 신탁업자 후견인이 관리하는 보이이 보이이 (증권사, 은행 등) 계좌에 입금)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AUGH 29 신탁계약 체결 위탁자겸 전문후견인 친족후견인 가정법원 보고서 제출 지시서 발행

2. 주택연금 - 치매보험 연계상품 개발·공급

- □ 고령 고객이 보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도 받고. 치매 위험성도 보장받을 수 있는 관련 상품 연계·공급
 - 주택연금(또는 치매보험)에 가입·이용 중인 고령 고객이 치매보험(또는 주택연금)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치매보험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(주금공-보험협회간 MOU 체결)
 - * 주택연금과 치매보험 동시 활성화 도모 → 취급 실적 등을 보아가며 실버암 보험 연계 상품 도입 등도 추가검토

3. 기타 고령친화 금융상품 출시

- □ 민간 금융기관의 고령층 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 맞춤형·밀착형 금융상품 설계·공급 활성화
 - ① 금융사기 방지기능이 부가된 고령자 전용카드* 개발 검토·추진
 - * 일정 금액 이상(예: 100만원) 결제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결제사실을 통보
 - ② 고령자 체력조건 등을 감안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유도
 - * 예) (현행) 일 평균 1만보 이상 걸은 경우 보험료 10% 할인 → (개선) 1만보 이상 걷기 힘든 고령층을 위해 할인 기준을 7천보 이상으로 완화
 - ③ 기대수명 연장 등을 감안하여 보험 가입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대비 5세 내외에서 상향조정토록 유도
 - * (현행) 상해보험 등 가입연령은 대체로 65세 전후 → (개선) 기대수명 연장을 감안하여 + 5세 내외에서 연령상한을 연장
 - ④ 교통안전교육을 미리 수료한 고령층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보험 상품 공급 활성화(일부 보험사에서 개발·공급 중)
 - ※ 향후 지속적으로 고령특화 상품 개발출시 예정

제4과제

고령층 대상 금융사기·착취 대응 강화

◇ 불법사금융, 금융사기, 금융착취 등으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적극적 역할도 강구

1. '금융착취' 대응을 위한 금융권 역할 강화

- □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착취 적발·감시 노력 강화
- 금융기관이 업무중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* 발견시, 거래처리 지연·거절 및 금감원·경찰 등 관계당국 등에 신고근거 마련**
 - * 美 금융소비자보호처(CFPB)는 '계좌 해지 등에 따른 페널티 무시', '잦은 거액 인출', '돌봄제공자나 제3자의 노인 자산에 대한 과도한 관심' 등을 금융착취 신호로 제시
- ** 금융기관 이행부담 감안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제도 설계 추진

※ 국내외 유사입법례

- [美 Senior safety act] 금융회사 직원이 노인 학대 의심거래를 공개 (disclosing) 시 민사·행정소송 면책
- [노인복지법 §39조의6] 의료인, 요양·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
- **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 정황**이 확인된 경우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**성년후견감독인*의 선임을 요구**할 수 있는 방안 모색
 - *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자로 현재는 법원 직권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, 친족, 검사, 지자체 장에 요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(민법 §940조의4)
- □ 금융기관의 **원활한 적발·감시업무 수행**을 위한 **법적·제도적 지원**
 - ㅇ 금융권 '고령충 착취 의심거래 감시시스템' 구축 근거 마련

※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감시 시스템 개요

- 고령자의 과거 거래패턴(거래유형·빈도 등)에 대한 분석 및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평소와 현저히 다른 거래양태(예, 과도한 고액 송금, ATM 거액 인출급증 등)가 발견된 경우 이를 자동으로 추출 → 금융회사 직원의 별도 확인 유도

- 의심거래 인지·신고방법,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직원 교육 강화
 - * 「금융교육협의회」를 중심으로 교육콘텐츠 개발·배포, 일정시간 이상 교육 수료를 업무상 면책 요건으로 하여 교육 참여도 제고
- '금융회사-금감원-경찰'간 항라인 개설을 통해 신속한 신고·조치 도모
 - 고령층 금융착취 방지 등(불완전판매 방지, 차별금지 등 포함)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「(가칭)노인금융Ⅲ해방지법」제정 추진
 - ※ 필요시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개정 및 동 법 하위규정 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

2. '불법사금융 · 보이스피싱' 대응 강화

- □ 고령층의 **피해신고 및 구제 강화**를 위해 **전통시장**, **경로당**을 중심으로 「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」 운영
 - * 코로나19 이후 피해증가에 대응하여 기설치·운영 중(금감원/지자체, '20.7월~)
- □ 고령자 전용 폰에는 '보이스피싱 방지 앱'을 미리 설치하여 출시 하는 방안 추진(금융당국-통신사업자-휴대폰제조사가 혐의 예정)
- □ 지연인출, 지연이체,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예방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령층의 가입을 유도
 - * [지연인출] CD/ATM기를 통해 100만원 이상 송금·이체시 30분간 인출·이체 지연 [지연이체] 이체 지시후 일정시간(최소 3시간) 경과 후 입금, 입금전 취소가능 [입금계좌 지정]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1백만원 이내 소액 송금만 가능
- □ 고령층에 대한 사기의심거래시*, 금융회사의 거래목적 확인,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 등 거래절차를 강화하고, 가족 등 지정인에 통지 강화
 - * 예·적금·보험 해지, 고액 이체·출금시 등 (cf. 현재 1천만원 이상 거래 중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은 거래시에만 거래목적 확인)
 - ※ 반사회적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범부처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'불법사금융 근절방안' 및 '보이스피싱 척결방안' 각각 발표(6.24일)

제5과제 │ 고령층 금융역량 강화

◇ 교육 콘텐츠. 전달체계를 다양화하고. 양질의 교육인력 확보 및 추진체계 정비 등을 통해 고령층 금융교육을 보다 내실화

1. 교육 콘텐츠 개발

- □ 생애주기 단계별로 필요 교육내용을 정리한 "금융이해력지도"를 바탕으로 고령층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
 - 금융사기 방지, 고위험상품 투자위험 설명, 은퇴후 재무설계· 자산증식 등 고령층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식 위주로 구성
 - * 생애주기단계별 필요 교육내용을 정리한 "금융이해력지도"를 바탕으로 개발
 - o **피해사례 위주. 건강·여행정보와의 연계** 등 고령층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구성

< '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'의 콘텐츠 개발 사례 >

- · **금융사기 및 고위험상품** 등으로 인한 **피해 사례**를 생생히 보여주는 **교육용 뮤지컬 연극** 등을 개발
- · '20년중 **뮤지컬 15회, 연극 33회** 실시, **마당극(퓨전국악)** 개발 예정 (총 **20,000명 고령층** 관람 예상) * 다만, 코로나 19 등으로 계획에 미달할 소지
- □ 개별 고령층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
 - ㅇ 디지털 기기 사용자체를 어려워하는 고령층을 위해 기초적인 스마트폰 이용법부터 금융앱 활용법까지 단계별 교육
 - * 예) 강사와 함께 금융앱을 다운받아 실제 이용해 보는 체험식 학습 cf. (고령층 금융소비자 FGI, '19.12월) "인터넷뱅킹도 일단 쓰기 시작하니 어렵지 않더라..."
 - □ 고령층이 믿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**콘텐츠 인증**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준 마련[인증 콘텐츠에는 브랜드(예: "finance sense") 표시]

2. 전달체계 다양화

- □ 고령층에게 **충분한 수준의 교육이 효과적으로**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전달채널을** 다양하게 **발굴·활용**
 - (대면 채널) 고령층 주요 생활공간(예, 복지회관·경로당 등)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전달
 - 금융회사도 사회공헌(CSR) 차원에서 고령 고객을 **인근 지점**으로 **주기적**으로 모시고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앱 체험 기회 제공
 - o (비대면 채널) 고령층 금융교육 콘텐츠를 한번에 찾아볼수 있는 '온라인 콘텐츠몰(mall)'을 구축하고, You-tube* 등 적극 활용
 - * 고령층에 인지도가 높으면서 금융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공인(公認) "Finance Communicator"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
 - * 신규콘텐츠 외에도 금융사기 방지 연극.뮤지컬 등 대면교육 실황도 녹화하여 전달
 - 금융 유관기관 중심으로 고령층 관심정보에 대한 보도자료 수시 배포 및 소식지 발간(가칭, '실버 금융소식지')
 - * 노후안정, 재테크 관련 금융정보(예, 주택연금 가입안내 등), 금융사기 피해 관련 등

3. 양질의 교육인력 확보

- □ 고령층에 **높은 전달력**을 가질수 있는 **다양한 강사진**을 적극 육성
 - (어르신 또래강사) 퇴직 금융인 등^{*}을 활용하여 고령층 금융교육 전문강사 육성('시니어 금융교육 전문강사' 자격과정 신설)
 - * 전국퇴직금융인협회, 시니어 ICT 사회참여 활동단(단원 약 295명) 등과 협업 추진
 - ** 퇴직직원 재고용을 통한 사회적 순기능도 부가적으로 달성
 - (청소년) 청소년을 통해 고령층에 대해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금융 사용법을 전달하는 '중고교생 자원봉사 프로그램' 개발・운영

4. 효율적 금융교육 거버넌스 구축

□ 내년도 법정기구로 신설되는 '금융교육협의회*'(長: 금융위 부위원장)를 중심으로 고령층 금융교육의 추진을 체계화

* 금융교육협의회 개요

- (근거) 「금융소비자보호법('21.3월 시행)」에서는 금융위 산하에 매년 금융교육의 기본방향을 의결하는 금융교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
- **(참여기관)**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서민금융진흥원, 업권별 협회, 시니어금융 교육협의회, 금융교육협회 등 25개 기관
- 콘텐츠 개발, 전달체계 관리, 지역별 교육 안배 등 금융교육 전반에 대한 기획·총괄 기능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 제고
- □ 매년 **중점 교육테마**(예, 보이스피싱, 고위험상품 관련 위험요인 등)를 선정하여 집중 교육
 - 교육 참여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, 기관간 교육결과의 공유 및 피드백을 통해 금융교육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

Ⅳ. 향후 추진계획

- □ 고령층 등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하에 세부 과제들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
 - 필요시 동 방안의 일부 **개별 추진과제**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화된 **세부방안**을 별도 마련하여 **추가 발표**할 예정
- □ 또한, 옴부즈만, 현장소통반 등을 통해 고령층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이용을 위한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·검토해 나갈 계획